1,3-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지침

2020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김수근

○ 개정자 : 사회정보연구원 김기웅

- 제·개정 경과
- 2013년 7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20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IARC(2012) 1,3-Butadiene. In: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 to humans. Chemical Agents and Related
 Occupations. IARC monographs, Vol. 100F. Lyon, France: World
 Health Organization.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, 309-338
-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 제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, 유기화합물-43 1,3-부타디엔.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1
- KOSHA GUIDE W-1-2019,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 H-82-2020, 호흡용 보호구의 선정·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
- KOSHA GUIDE H-71-2015,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 지침
- KOSHA GUIDE H-147-2017, 특별관리 물질 취급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지침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보건조치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),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(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),
-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(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)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(유해인자 허용기준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(작업환경측정),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(일반건강진단), 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,
-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공표일자 : 2020년 12월
- 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,3-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9조(보건조치), 제104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, 제 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), 제106조(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)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편(보건기준) 제1장(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)의 규정에의하여 작업장에서 1,3-부타디엔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의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1.3-부타디엔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발암물질"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며, 발암성 1(A,B)인 물질을 용량비율 0.1이상 또는 발암성 물질 2인 물질을 용량비율 0.1%이상 함유한 제제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1.3-부타디엔의 물리화학적 특성

1,3-부타디엔은 탄소원자 4개와 수소원자 6개로 이루어진 불포화탄화수소이며, 1,2-부타디엔과 1,3-부타디엔의 두 가지 이성질체가 있는데 흔히 부타디엔이라고 할 때는 1,3-부타디엔을 말한다.

1,3-부타디엔의 물리화학적 성상은 <표 1>과 같다. 인화성이 강해 강한 산화제, 동, 동 합금, 공기 및 철과 접촉할 때 폭발 위험이 크다. 표준공기 상태에서 매우 가연성이 높은 가스이다.

항목	내 용	항목	내 용
물질명	1,3-부타디엔	분자량	54.09
물리적 성상	색깔이 없는 투명한 기체	냄새역치	1 to 1.6 ppm(recognition)
CAS No.	106-99-0	증기압	1,840 mmHg(20℃)
구조식	CH ₂ =CH-CH=CH ₂	화학식	C4H6
분자량	54.09	pН	_
녹는점	-108.9℃	끓는점	-4.4°C at 1atm
비중	0.65℃(20℃, 물=1)	인화점	-104.4℃
증기압	_	용해도	물에 대한 용해성이 0.1g/100ml 이하이며, 알코올, 에테르, 벤젠, 아세톤에 녹음
동의어	Biethylene,; Divinyl; Erythrene; Pyrrolylene; Vinylethylene		

<표 1> 1,3 -부타디엔의 물리·화학적 성질

5. 1,3-부타디엔의 노출

- (1) 원유를 이용하여 1,3-부타디엔을 정련하는 석유정제업체에서 시료채취를 하는 작업자, 품질관리팀에 분석자 등이 노출될 수 있다.
- (2) 환경 중에 존재하는 1,3-부타디엔은 주로 화학제품이나 석유제품, 고무제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배출된다.
- (가) 1,3-부타디엔은 스티렌-부타디엔-스티렌(styrene-butadiene-styrene, SBS), 아크릴로니트릴 -부타디엔-스티렌(Acrylonitirile-butadiene-styrene, ABS) 합성수지와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된다.

- (나) 1,3-부타디엔은 합성고무인 스티렌-부타디엔 고무(styrene-butadiene rubber, SBR), 부타디엔 고무(butadiene rubber, BR)의 원료로 사용되며, 부타디엔-스티렌 라텍스(Styrene butadiene Latex, SB Latex)의 원료로 사용된다.
- (3) 로켓 추진제, 접착제의 유액, 윤활유 첨가제, 살균제등의 원료로 사용된다.
- (4)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제품을 가지고 2차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작업 자(예를 들어 고무 타이어 제조 공장, 자동차 범퍼 사출(ABS 공정)가 노출될 수 있다.

6. 1,3-부타디엔의 체내동태

6.1 흡수

1,3-부타디엔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며,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흡수된다.

6.2 분포 및 축적

1,3-부타디엔의 노출을 받은 근로자의 말초 혈액에서 1,2-에폭시-3-부텐과 헤모글로빈 분자의 N 말단 발린과의 결합하여 헤모글로빈 부가체를 만든다.

6.3 대사

- (1) 1,3-부타디엔은 주로 간 마이크로 솜 시토크롬 P450 산화 효소에 의해 2개의 이중 결합 중 1개(1,2-에폭시-3-부텐의 생성) 또는 2개(1,2: 3,4-디에폭시 부탄의 생성)가 단계적으로 에폭시화되어 활성 대사산물인 에폭 사이드가 생성된다.
- (2) 생성된 에폭사이드는 epoxide hydrolase(EH) 또는 glutathione S-transferase (GST)에 의해 에폭시 고리의 분열을 받아 해독되어 더욱 활성이 있는 에폭시 디올(3,4-epoxy-1,2-butanediol)이 생성될 수 있다.

6.4 배설

소변으로 주로 배설되며 소변 대사물로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.

7. 1.3-부타디엔의 발암성

- (1) 국제암연구기구(IARC)는 1,3-부타디에 노출로 인한 백혈병과 악성림프종이 발생 이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인체발암물질(Group 1) 분류하고 있다.
- (2) 1,3-부타디엔은 생체 내에서 에폭시화를 받고 그 활성대사산물인 1,2-에폭시 -3-부텐, 1,2:3,4-디에폭시 부탄 및 3,4-에폭시-1,2-부탄디올이 종양 발생에 관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.
- (3)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(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, ACGIH)에서는 A2(사람에게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)로 분류 하고 있다.

8. 1,3-부타디엔에 의한 암 예방

8.1 작업관리

8.1.1 작업관리 방법

1,3-부타디엔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.

- (1) 사업주는 1,3-부타디엔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1,3-부타디 엔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, 1,3-부타디엔의 취급상 주의사항,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,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을 게시한다.
- (2) 1,3-부타디엔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용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작업복과 개인 의복은 분리하여 보관한다.
- (3) 1,3-부타디엔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의 저장, 섭취, 흡연 등을 금지 한다.

KOSHA GUIDE

H - 112 - 2020

- (4) 발생되는 폐기물 및 청소 걸레 등은 지정된 밀폐 장소에 보관하고,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- (5) 1,3-부타디엔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손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어 1,3-부타디엔을 다른 장소로 비산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 및 세탁설비 등도 설치한다.

8.1.2 교육

1,3-부타디엔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시키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.

- (1) 당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1.3-부타디엔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(2) 당해 작업장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는 1.3-부타디엔의 물리ㆍ화학적 특성
- (3) 1.3-부타디엔의 독성과 건강장해 예방대책
- (4) 직업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현재 조치 사항 및 유지, 관리 요령
- (5) 공정별 표준작업 요령
- (6)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
- (7) 보호구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
- (8) 응급처치방법
- (9) 기타 안전 · 보건 조치 등

8.1.3 1,3-부타디엔의 취급일지 작성

사업주는 1,3-부타디엔을 취급하는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매 분기 마다다음 내용이 포함된 1.3-부타디엔의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30년간 보존한다.

- (1) 근로자 성명
- (2) 물질 명 및 사용량
- (3) 작업내용 및 업무의 종사기간
- (4) 위급상황에 대한 개요 및 응급조치 요령

8.1.4 근로자의 준수사항

- 1,3-부타디엔의 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- (1) 1,3-부타디엔의 취급 작업 중에는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.
- (2) 1,3-부타디엔가 가능한 한 작업장 내로 발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.
- (3) 1,3-부타디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.
- (4)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.
- (5) 기타 1,3-부타디엔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.

8.1.5 취급 및 보관 시 주의사항

- (1) 통풍이 잘 되는 18~38℃의 저장소에 밀폐 보관하고, 취급 또는 작업 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한다.
- (2) 화재나 폭발위험성이 있으므로 열원, 알칼리, 스파크, 불꽃, 가연성물질, 점화원과 격리하여 저장해야 한다.
- (3) 산, 알칼리, 아민류, 산화제와 혼합위험성(incompatible)이 있으므로 격리하여 저장 해야 한다.

8.2 작업환경평가

8.2.1 작업환경측정 준비와 실시

- (1) 사업주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해야한다.
- (2)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- (3)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 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해야 한다.
- (4) 사업주는 어떤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 없는지, 1,3-부타디엔의 노출기준 이상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근로자는 그들에게 정하여진 1,3-부타디엔에 1일 8시간 시간가중노출을 반영하는 근로자의 호흡위치에서의 시료채취에 응해야 한다.
- (6) 수 명의 근로자가 작업분류, 업무, 작업지역, 작업교대, 일하는 기간, 1,3부타디엔 에 노출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면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 대신에 이들 근로자를 대표하는 수만큼의 수로서 노출 농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대표성을 갖는 시료의 수는 최고의 1,3-부타디엔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환경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44호)에 따른다.
- (8)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평가에 대한 모든 기록은 30년간 보존한다.

8.2.2 공기 중 노출기준

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 가중평균농도(Time Weighted Average : TWA)로 $2ppm(4.4 \text{ mg/m}^3)$, 단시간 노출기준(STEL) $10ppm(22 \text{ mg/m}^3)$ 이다.

8.2.3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

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(1)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
- (2)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
- (3)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
- (4)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

8.3 작업환경관리

8.3.1 1,3-부타디엔의 대체 사용

- (1) 1,3-부타디엔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한다.
- (2) 물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.

8.3.2 작업공정의 적정 배치

작업장 내에 1,3-부타디엔 취급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배치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
- (1)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시킨다.
- (2) 해당 공정을 가능한 한 자동화한다.
- (3) 관련 기계, 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1,3-부타디엔의 노출을 최소화한다.

8.3.3 발생원의 밀폐 등 조치

1,3-부타디엔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한다.

- (1)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킨다.
- (2) 1,3-부타디엔의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의 내부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음압으로 유지한다.
- (3) 작업특성상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개구부 등을 통하여 1,3-부타디엔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1,3-부타디엔의 발산을 최소화한다.

8.3.4 환기

8.3.4.1 전체환기

사업주는 1,3-부타디엔을 취급하는 공정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배기량을 보충하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필요 송풍량이 달성되지 않는다.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

- (1) 외부공기는 가능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는 장소여야 한다.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송풍기나 급기구에는 필요시 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필터나 흡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2) 작업장 외부로 배출된 공기가 당해 작업장 또는 인접한 다른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3)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할 때 국소배기장치에서 배기되는 송풍량을 고려하여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야 한다. 필요 환기량의 산정은 "산업환기 설비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GUIDE W-1-2019)"의 <별표1>을 참고한다.

8.3.4.2 국소배기장치의 설치

작업특성상 1,3-부타디엔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한다.

- (1)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 방법, 발암성물질의 발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1,3-부타디엔을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한다.
- (가)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한다.
- (나) 후드의 형식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다)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되 발암성물질이 발생되는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한다. 후드로 들어가는 공기 방향이 근로자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2)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손 실을 최소화한다.
- (3) 국소배기장치는 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송풍기,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.
- (5)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, 난간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.5배 이상으로 하여 배출된 발암성물질이 당해 작업장으로 재 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- (6) 전체환기장치의 외부 공기 유입구와도 15 m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.
- (7)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체흡착 방식, 연소 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.
- (8)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<표 2>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물질의 상태	후드 형식	제어풍속(m/sec)		
	포위식 포위형	0.7		
A1 1 11 11	외부식 측방흡인형	1.0		
입자 상태	외부식 하방흡인형	1.0		
	외부식 상방흡인형	1.2		

<표 2>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

- 1. 물질의 상태에서 "입자상"이라함은 발암성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흄,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.
- 2.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 제어 풍속을 말한다.
- 3. 이 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 풍속을 말한다.
- (가)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 면에서의 풍속
- (나) 외부식 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발암성물질을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후드 개구 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위치의 풍속

8.3.4.3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가동

1,3-부타디엔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- (1)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한다.
- (2) 국소배기장치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상 상태를 즉시 인지 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. 후드 가장자리에 가벼운 끈 등을 부착하여 제어되는 방향과 강도를 근로자가 보고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.
- (3) 1,3-부타디엔이 발산되어 근로자가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거나 화재·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, 장비 등의 가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한다.
- (4)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업장 내에 1,3-부타디엔이 발산되는 제품 등이 있는

경우에는 유해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한다.

(5) 당해 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가동일지 등을 기록, 보관한다.

8.3.4.4 국소배기장치의 관리

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한 후 재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,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다.

- (1)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 퇴적 상태
- (2) 덕트 접속부의 이와 유무
- (3) 흡기 및 배기 능력의 적정성
- (4)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

8.3.4.5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실시

- (1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(안전검사대상기계 등), 시행규칙 제130조(검사원의 자격)에 의거하여 작업 중 국소배기장치(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포함)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, 보존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 시켜 야 한다.

8.3.5 개인보호구

(1) 1,3-부타디엔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한다. 다만, 1,3-부타디엔의 발생 상태가 가스상으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.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세

KOSHA GUIDE

H - 112 - 2020

한 내용은 "호흡용 보호구의 선정·사용 및 관리에 관한(KOSHA GUIDE H-82-2020)"를 참고한다.

- (2) 근로자의 피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갑은 1,3-부타디엔의 피부 흡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니트릴, 네오프렌 소재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. 작업특성상 근로자가 피부 보호구의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사용하고 작업 한다.
- (3) 작업특성상 1,3-부타디엔이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 한다. 눈 보호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"눈 보호구의 선정 및 유지·증진에 관한 안전가이드(KOSHA GUIDE G-25-2011)"를 참고한다.
- (4) 개인보호구의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"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(KOSHA GUIDE G-12-2013)"를 참고한다.

8.4 건강관리

8.4.1 근로자 건강진단

8.4.1.1 건강진단을 할 때 고려사항

- (1) 1,3-부타디엔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. 이때 관찰하고자 하는 주요 소견은 조혈기, 중추신경계 소화기 등의 이상 증후이다.
- (2) 1,3-부타디엔의 직접적인 노출을 밝힐 수 있는 생체지표물질과 그에 따른 기준이 없다.

8.4.1.2 건강진단 실시방법

건강진단 실시 주기, 건강진단항목, 산업의학적 평가(건강관리구분,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 평가, 사후관리)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"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, 유기화합물-43 1,3-부타디엔. 보건분야 기술자료 연구원. 2020-산업안전보건연구원-351 "를 참고한다.

8.4.2 수시건강진단을 위한 참고사항

(1)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 수시건강 진단을 실시한다.

"근로자가 혈액학적 이상, 급성 신경학적 장해(의식변화, 혼수, 보행 장해 등) 등 의 증상 및 증후를 보일 때"

(2)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하는 때에는 자문에 응한다.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사업주에게 수시 건강진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결과서로 통보한다.

8.4.3 근무금지

1,3-부타디엔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에는 임신부나 18세 미만의 사람이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.